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23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7월 2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9년 7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9. 7. 15 제282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전재원 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. 전부개정)에
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7조"로 함
(안 제1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·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이 2008. 8. 4.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인 "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7조"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Ⅴ. 토론요지 : "생략"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학교보건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0949호, 2008. 8. 4, 전부개정]

제7조(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)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·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